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22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안 제8조 제9항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8.

다. 회 부 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제1항제14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

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안 제 66조 제1항 제14호)

가. 개정안 요지

- 시·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정보통신 공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66조 제1항 제14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① ----- ----- -----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공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다른 -- ---
15. (생략) ②·③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의 구조적·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하여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영업정지 등 사업장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¹⁾에 따르면 사업주가 ①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한편,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정보통신공사업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²⁾할 수 있는데,

“다른 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경각심 고취 등 명백히 밝힐 상징적 입법 조치의 필요를 감안하고,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예를 들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를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명시³⁾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명확하게 두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법적 권한은 명확해지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하위법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제1항⁴⁾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건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뿐임.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그 요청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과 달리 영업정지 등의 근거 법률인 개별법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가 가능한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중대재해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 셋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명뿐만 아니라 조문번호도 명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행 규정상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이미 가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를 구체화하여 규정을 명확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5